

주주여러분께

## 신 주 발 행 공 고

상법 제 416 조에 의거 2025 년 06 월 10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--- 다            음 ---

### ■ 유상증자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38,000,000주 (1주당 액면가액 500원 기준)
2. 자금조달의 목적 : 운영자금,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자금
3. 신주의 발행방법 :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
4. 신주의 발행가액 : 1,295원 (이사회 결의 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 발행가액이며,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예정 발행가액과 확정 발행가액은 상이할 수 있음)

-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5-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 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,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(구) 「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.

(1)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%를 적용,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. 단,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.

$$* 1차 발행가액 = [1차 기준주가 \times (1 - \text{할인율})] / [1 + (\text{증자비율} \times \text{할인율})]$$

(2)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%를 적용,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. 단,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.

\* 2차 발행가액 = 2차 기준주가 x (1-할인율)

(3) 확정 발행가액 :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6 및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5-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%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%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. 단,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.

\* 확정 발행가액 = Max{Min[1차 발행가액, 2차 발행가액],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%}

(4)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5. 신주 배정기준일 : 2025년 07월 11일 (예정)

6. 신주의 배정방법 : 구주주에 의한 청약은 "공동대표주관회사"가,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"공동대표주관회사" 및 "인수회사"가 총괄한다.

(1) 구주주 청약 : 신주배정기준일(2025년 07월 11일 예정) 18: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(이하 "구주주"라 한다)에게 본 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.677915920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(단, 1주 미만은 절사함)를 구주주의 배정범위로 하고,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. 단,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 사채의 행사,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,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.

(2) 초과청약 :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, 실권주를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가 초과청약(초과청약비율 : 배정 신주 1주당 0.2주)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(단,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% 배정),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.

(i) 청약한도 주식수 =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+ 초과청약 한도주식수

(ii)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=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

(iii)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=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 (20%)

(3) 일반공모 청약 :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"공동대표주관회사" 및 "인수회사"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,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%이상을 배정하고,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% 이상을 배정한다. 나머지 65%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.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%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%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%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. 다만,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,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.

가.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"공동대표주관회사" 및 "인수회사"의 "청약물량"("공동대표주관회사" 및 "인수회사"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, "공동대표주관회사" 및 "인수회사"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)에 대해서는 "공동대표주관회사" 및 "인수회사"의 "총청약물량"("공동대표주관회사" 및 "인수회사"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"청약물량"의 합을 말한다)을 "일반공모 배정분"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"공동대표주관회사" 및 "인수회사"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(이하 "통합배정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나.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. 다만,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

공모 배정분 10%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%와 개인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%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. 다만,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,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.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,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"공동대표주관회사" 및 "인수회사"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.

다. "공동대표주관회사" 및 "인수회사"의 일반공모 "총청약물량"이 "일반공모 배정분"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,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"공동대표주관회사" 및 "인수회사"가 잔액인수계약에 따른 의무인수비율에 각각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.

라. 단, "공동대표주관회사"와 "인수회사"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,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50,000주(액면가 500원 기준) 이하 이거나,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.

7. 청약기간 :

- (1) 구주주 청약기간 : 2025년 08월 14일 ~ 2025년 08월 18일 (2영업일간)
- (2) 일반공모 청약기간 : 2025년 08월 20일 ~ 2025년 08월 21일 (2영업일간)

8. 신주의 청약증거금 :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

9. 청약사무 취급처 :

- (1) 구주주 중 일반주주(기존 '실질주주'):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"공동대표주관회사"의 본·지점
- (2)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(기존 '명부주주'): "공동대표주관회사"의 본·지점
- (3) 일반공모 청약자 : "공동대표주관회사" 및 "인수회사"의 본·지점

10. (예정)납입기일: 2025년 08월 25일

11. 신주 배당 기산일 : 2025년 01월 01일

12. 공동대표주관회사 : 삼성증권(주) (인수비율 : 50%), NH투자증권(주) (인수비율 : 30%)
13. 인수회사 : 한양증권(주) (인수비율 : 20%)
14. 주금납입처 : 신한은행 삼성역기업금융센터 지점
15.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:
  - (1)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(2019년 9월 16일)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는다.
  - (2)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: 삼성증권(주), NH투자증권(주)
  - (3)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: 2025년 07월 30일~2025년 08월 05일 (5영업일간)
16. 상장예정일 : 2025년 09월 04일
17. 기타사항 :
  - (1)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([www.kangstem.com](http://www.kangstem.com))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.
  - (2)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,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.
  - (3)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.
  - (4)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  - (5)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